[목 차]

제 1 조 자발적 취업
제 2 조 아동노동 금지
제 3 조 근로시간
제 4 조 임금과 복리후생
제 5 조 근로자 인권
제 6 조 차별금지
제 7 조 결사의 자유
제 8 조 안전 및 보건
제 9 조 안전보건 교육
제 10 조 환경보호
제 11 조 공정거래
제 12 조 개인정보보호
제 13 조 법규 등의 준수
제 14 조 근로자 피드백, 참여 및 고충처리
제 15 조 공급업체 책임

[제/개정 이력 및 승인]

최신본 승인	작성	검토	승인
			결재문서.pdf

개정번호	제/개정일	작성팀	작성자	제/개정내역	비 고
0	2023.6.13	경영지원팀	임원진	신규 제정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
서 문

TKG 휴켐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짐을 인지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또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TKG 휴켐스 협력사 행동규범(지침)을 제정하였습니다.

본 행동규범의 목적은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, 협력사 임직원이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.

본 규범은 노동인권, 안전보건, 환경보호, 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,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나아가 자신들과 거래하는 공급업체도 본 행동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
회사는 향후 단계적으로 협력사를 선별하여 본 행동규범의 적용을 검토하고, 이들 협력사로 하여금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준수하도록 권장하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본 행동규범의 준수를 서약하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의 협력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에 따라 본 행동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

제 1 조 (자발적 취업)

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관련 법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,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.

제 2 조 (아동 근로 금지)

협력사는 아동(만 15 세 미만 또는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)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.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, 18 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, 야간근무를 포함해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.

제 3 조 (근로시간)

협력사는 사내·외 비상 사태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, 근로자가 법규에 의해 정의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적절한 휴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.

제 4 조 (임금과 복리후생)
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인 최저 임금, 초과 근무시간 보상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제 5 조 (근로자 인권)
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해 인격권, 건강권,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니며,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제 6 조 (차별 금지)
협력사는 인종,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, 승진,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제 7 조 (결사의 자유)
협력사는 관련 법규에 따른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,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.

제 8 조 (안전 및 보건)
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,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제 9 조 (안전보건 교육)
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제 10 조 (환경보호)
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제 11 조 (공정거래)
협력사는 모든 사업 및 거래 관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준수해야 합니다. 또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, 부패행위,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제 12 조 (개인정보보호)
협력사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하며,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.

제 13 조 (법규 등의 준수)
협력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현지 법규, 규정 및 본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제 14 조 (근로자 피드백, 참여 및 고충처리)
협력사는 본 협력사 행동규범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피드백이나 위반사항을 접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해야 합니다. 근로자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.

제 15 조 (공급업체 책임)
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 사항을 자신과 거래하는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3 년 6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.